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333호 2014. 4. 25.(금)

사천시의회 규칙

○ 사천시의회 규칙 제27호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----- 2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편집 : 기획감사담당관실 ☎ 831-2215·FAX 831-6011

사 천 시 공 보

제333호(2)

사천시의회 규칙

사천시의회 규칙 제27호

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4년 4월 25일

사천시의회 의장 최갑현

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

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2조제1항 중 “이해관계자” 를 “이해관계가 있는 사람” 으로, “자” 를 “사람” 으로 한다.

제8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

1. 흥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
2. 술기운이 있는 사람
3. 그 밖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

제87조제2항 및 제4항 중 “자는” 을 각각 “사람은” 으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